

페비닐 전용봉투 제작 과업지시서

페비닐 전용봉투 구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를 “강북구”라 하고 계약 상대방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다음과 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0일로 한다.
2. 인쇄 동판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물품제작 전에 물품사양을 확인받아 제작한다.
5.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완료하며, 상황에 따라서 분할납품 할 수 있다.
6. 지정한 장소로 납품하며 납품확인서를 제출한다.
7. 납품이 완료되면 동판을 반납한다.
8.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 2회 이상 납품기일을 어기거나, 납품된 물품 중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완지시를 어겼을 때
 -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한 때
9.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